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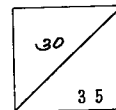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24	12	1996. 5. 18.	홍재 김 명 호

의안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외취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확대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,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붙임>

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1. 발행현식 : 각 금융기관이 할인·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(이하 "원어음"이라 한다)을 분할 또는 통렬한 표지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 2. 최고 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3. 만 기 :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에서 60일 이상 180일 이내(중도환매 불가능) 다만, 잔여만기가 60일 이상인 수개의 원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서 각 원어음의 잔여만기중 최장만기 이내 4. 최저발행금액 : 2천만원 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전월중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(전월 10일, 20일 및 말일 기준 할인액에서 일반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의 평균치)의 30% 이내 6. 실시일자 : 1994. 7. 18	1.~ 4. (현행과 같음) 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전월중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(전월 10일, 20일 및 말일 기준 할인액에서 일반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의 평균치)의 50% 이내 6. 실시일자 : 1995. 5. 20